

[별표 1] <신설 2000.5.10, 2005.7.18>

업무정지 등 처분기준(제29조의2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신고효력상실에 해당하는 때 또는 업무신고효력상실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신고효력상실에 의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(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)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해당법조문	처 분 기 준	
		건축사	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
1.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 무신고 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	법 제28조제 1항제1호	업무신고 효 력상실	
2.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	법 제28조제 1항제2호	업무정지 12 월	
3.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	법 제28조제 1항제3호	업무신고 효 력상실	업무정지 12 월
4.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 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 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	법 제28조제 1항제4호	업무신고 효 력상실	업무정지 12 월
5.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	법 제28조제 1항제5호	업무신고 효 력상실	
6.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			
가.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	법 제28조제 1항제6호	업무정지 8 월	

나. 「건축법」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·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	법 제28조제1항제6호	업무정지 월	4	업무정지 월	2
다. 「건축법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28조제1항제6호	업무정지 월	6	업무정지 월	4
라. 기 타	법 제28조제3항제1호	시정명령			
7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	법 제28조제1항제8호	업무정지 월	6		
8.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·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	법 제28조제1항제9호				
가.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	업무정지 월	6		
나.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		업무정지 월	4		
9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위반한 때	법 제28조제1항제10호				
가. 「건축법」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		업무정지 월	2	업무정지 월	1
나. 「건축법」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		업무정지 월	2	업무정지 월	1
다. 「건축법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					
(1)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		업무신고 효 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월	12	업무정지 월 또는 업 무정지 6월	12

(2)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월	6 업무정지 월	4
(3)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월	3 업무정지 월	2
라. 「건축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	업무정지 월	6 업무정지 월	4
마. 「건축법」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(1)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	업무신고 효 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 월	업무정지 12 월 또는 업 무정지 6월	12
(2)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킨 때	업무정지 월	6 업무정지 월	4
(3)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	업무정지 월	2 업무정지 월	1
바. 「건축법」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			
(1)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월	4 업무정지 월	2
(2)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월	2 업무정지 월	1

사. 「건축법」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	
(1)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
(2)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때	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
아. 「건축법」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시설, 내화구조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	
(1)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	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12월 또는 업무정지 6월
(2)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
(3)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
자. 「건축법」 제44조,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, 동법 제50조의2, 동법 제51조,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	
(1)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

(2)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		업무정지 월	2	업무정지 월	1
10.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	법 제28조제 1항제12호	업무정지 월	2		
11.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	법 제28조제 3항제2호	시정명령			
12.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위반한 때	법 제28조제 3항제3호	시정명령			